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88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은평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
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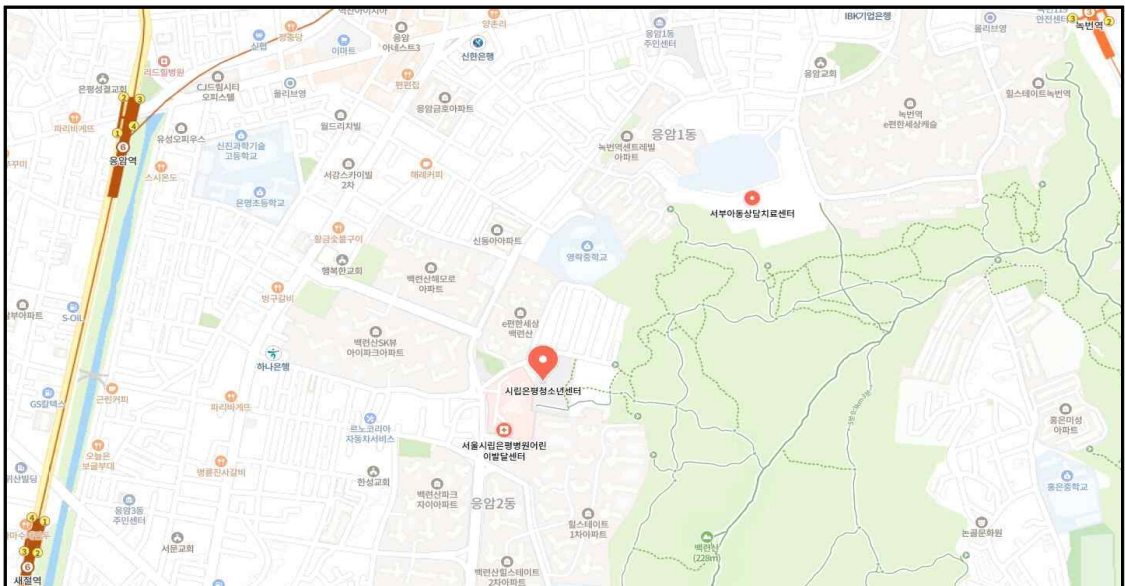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 개관일자 : 2003. 11. 1.
- 시설규모 : 부지 13,500 m^2 / 건물 4,963 m^2
- 주요시설 : 청소년전용공간, 프로그램실, 특성화 프로그램실.

수영장, 대강당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1.1 ~ 2027.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550백만원('24년)
- 산출근거
 - 인건비 861백만원, 운영비 868백만원, 사업비 2,72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92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정혜진 (☎02-2133-4121)